2) 개정개요

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에서 법정세율의 30%범위내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30%인상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, 이번 개정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을 모두 법정세율로 규정하고, 담배소비세중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(조정세율)에서 510원으로 50원을 인상조정 하였다.

3) 개정조문 및 해설

○ 담배소비세 세율조정 - 법제229조, 영제173조의2 삭제

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 조정내용은 아래 <표 3>과 같다.

<표 3> 담배소비세 세율조정

담배종별		단위	개정전세율(원)		개정(원)	비 고
			법정세율	조정세율	법정세율	
흡연용	제1종 궐련	20개비	360	460	510	50원인상
	제2종 파이프담배	50g	700	910	910	조정세율의 법정화
	제3종 엽궐련	〃	2,000	2,600	2,600	
	제4종 각련	〃	700	910	910	
씹는담배		〃	800	1,040	1,040	
냄새맡는 담배		〃	500	910	910	

7.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

1) 배 경

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법인의 불요